

## 경운대학교 운항실습비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비행교육원 규정 제28조에 따라 비행교육원에 입과 예정인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게 부과·징수하는 운항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책정 및 부과·징수)** 제1조에 따른 운항실습비는 교육과정에 따라 총장이 책정하고, 수업연한 내에 학기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 · 징수한다.

구분	징수학기	비고
CPC (민항공 조종사 양성 과정)	8학기	정규과정

**제3조(징수고지 및 기일)** 운항실습비는 등록금 고지서(통합정보시스템)으로 고지하며 납부기일은 등록금 납입 기간과 같다.

**제4조(운항실습비의 대체)** 운항실습비를 납부하고,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 운항실습비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일반 휴학(육아휴학 포함)할 경우
2. 군 입대 및 질병(4주 이상 입원가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3/4선 이내에 휴학한 자) 휴학할 경우

**제5조(운항실습비의 반환)** 납부한 운항실습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비행교육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다.

**제6조(반환절차)** 운항실습비 환불신청기한은 4학년 2학기 졸업 이전으로 하며,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재학 중 휴학자 처리 기준)** 휴학자의 처리 기준은 비행교육원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① 위의 운항실습비는 정규교육과정에 한하여 적용되며, 추가적인 비행교육과 관련된 운항실습비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 시행상 필요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